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82
----------	---------

발 의 연 월 일 : 2022. 9. 26.

발 의 자 : 이종숙, 강선영, 김현진,
김순옥, 신찬호, 김지수,
박학용, 박주선, 최세진

1.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단편적인 정책과 더불어 출산 전·후 임신부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임신부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지원대상 및 제공서비스, 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나. 협조부서 : 가족정책과

다. 입법예고 : 2022. 10. 6. ~ 2022. 10. 1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전화: 2600-1807, 팩스: 2620-05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 단계에서부터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사돌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신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배우자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제4조(제공서비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

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1. 청소, 세탁 및 정리 등 가사기본서비스
2. 병원 동행 등 이동편의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 외에 구청장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서비스를 1일 4시간이내, 최대 12회까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서비스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복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임신부에게는 횟수 등 서비스의 일정 부분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② 서비스 제공기관은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서비스의 지원) 제4조 및 5조의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때에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서비스에 제공된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